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8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이명수·장제원·류성걸

성일종 · 김희국 · 최춘식

황보승희 · 윤상현 · 홍문표

강기윤 • 박덕흠 • 김예지

김형동 · 최연숙 · 박완수

최형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조사·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 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조사사업"을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창업·육성"을 "창업·육성, 안전관리"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	설치 • 운영 등) ①
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	1
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u>현장의견</u>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	<u> 청취 • 조사사업</u>
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	2
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	
발·지원, <u>창업·육성</u> 및 노	<u>창업·육성, 안전관</u>
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	<u>리</u>
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